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9. 25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9월 8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0년 9월 8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7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0년 9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가. 개정이유

- '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촉진을위한조례를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규격을 세분화하고 봉투가격 수수료를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원할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제6조제1호)
- 감량의무사업자의 의무 강화(제6조제2호·제3호)
-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 의무규정 삭제(제10조)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규격·가격 규정 신설(제11조제2항)
- 수거·운반·보관기준 설정(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대완)

본 조례 개정사항은 환경부장관과 서울특별시시장의 준칙안에 따른 불가피한 개정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을 보면 5ℓ 이상은 일반쓰레기 봉투가격과 같이 하여 문제점이 없는 반면 2ℓ와 3ℓ의 소봉투의 경우는 가격이 50원과 70원으로 되어 있는 바 쓰레기 용량에 큰 차이도 없으며 가격 또한 거래단위를 감안 현실성을 고려하여 2ℓ용은 사용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3ℓ용의 70원인 가격이 원가 계산된 금액이 아니라면 가격을 50원으로 하여 시민생활에 편리하도록 서비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7

제안년월일 : 2000. 9. 8

발 의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 사유

'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촉진을위한조례를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규격을 세분화하고 봉투가격 수수료를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원할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제36조제1호)
 -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은 적정처리시설(1. 폐기물처리업자, 2. 폐기물재활용신고자,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위탁)을 갖춘 자가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을 예방
 - 다만, 음식물쓰레기를 무료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농·축산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감량의무사업자의 의무 강화(제6조제2호·제3호)
 - 감량의무사업자가 위탁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서류 제출
 -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할 경우 건조, 발효에 따른 수분함량 기준 강화 : 75% → 25~40% 미만으로 함.
-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 의무규정 삭제(제10조)
 -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설치 의무규정 삭제(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운영비 과다 소요 등으로 미가동중인 현실을 고려)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규격·가격규정 신설(제11조제2항)
 - 2ℓ : 50원, 3ℓ : 70원, 5ℓ : 90원, 10ℓ : 180원, 20ℓ : 360원
- 수거·운반·보관기준 설정(제12조)
 -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거·운반토록 함.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 예산조치 : 없음
- 합의사항 :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조례)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를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로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칙 별표4의 제5호 가목”을 “규칙 별표4의 제3호의 라목”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중 “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를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제5조제1호중 “감량화 또는 자원화”를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로, “날짜에”를 “일시에”로 한다.

제6조본문중 “법 제12조 및 영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 및 영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제2호 내지 제3호를 제3호 내지 제4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종전의 제3호중 “제2호의”를 제4호중 “제3호의”로 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유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제1호중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별지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제2항중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를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법 제16조제1항의”를 “법 제12조의”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중 파쇄기, 압축기, 탈수기에 의한 감량은 할 수 없다.

③구청장은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중 “정하되”를 “정하되 별표 2와 같이 하고”라 하고, 종전의 “별표2”를 “별표3”으로 하며, 별표2·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2조제1항중 “분리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을 “분리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 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중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을 “자원화하는 시설을”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제14조제1항중 “별표2”를 제15조제1항의 “별표3”으로 한다.

제14조(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규칙 별표4호제5호의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 5. (생략)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재출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3. (생략)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영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1.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2. 규칙 별표4의제3호라목 3.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 5. (현행과 같음) 6.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1.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2.~3. (현행과 같음)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법 제12조 및 영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 (안)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 처리 또는 재생 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신설> 2.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생략)	1.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1.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 (안)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생략) 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⑤(생략)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자체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재활용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자체 감량화 처리할 때에 발생된 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중 파쇄기, 압축기, 탈수기에 의한 감량은 할 수 없다. ③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생략)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현행과 같음) ②.....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③~⑤(현행과 같음)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법 제12조의 ②.....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정하되 별표 2와 같이 하고,	②..... 정하되 별표 2와 같이 하고,	②..... 정하되 별표 2와 같이 하고,
③~④(생략)	③~④(현행과 같음)	③~④(현행과 같음)	③~④(현행과 같음)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분리배출지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거나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로	②.....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로	②.....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로
③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축산농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재활용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개시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삭제)	④(삭제)	④(삭제)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②(생략)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자원화하는 시설을 ②(현행과 같음)
제14조(신설)	제14조(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별표2 ②(생략)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별표3 ②(현행과 같음)
제15조(규칙제정) (생략)	제16조(규칙제정) (현행과 같음)

{별표2}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판매가격(제11조제2항)관련

(단위 : 원)

용량(ℓ)	봉투 가격	비고
2	50	
3	70	
5	90	
10	180	
20	360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삽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음식물쓰레기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	10	20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5	10	20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3.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6조제2항 관련)		30	50	100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삽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상	
폐기물관리법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음식물쓰레기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	10	20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5	10	20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2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3.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2조 관련)		100	300	500

신 · 구조문 대비

=====

(별지1호서식)

(현 행)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변경)신고서

신 고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 객실 합계면적 : m'
	☐ 대규모 점포 : 사업장면적 : m'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m'
	☐ 호텔 · 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예상량				kg/월			
자가 감량 처리 계획	감 량 처 리				부산물 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 일 자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
		kg/일		kg/월	kg/월		
자 가 재활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위탁재활용 계 획	위탁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탁업소명	업 종	위탁업소 주소,전화		
	kg/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 · 운반및재활용출진을위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1999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개 정 (안)}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 객실 합계면적 : m' ☐ 대규모 점포 : 사업장면적 : m'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m' ☐ 호텔·콘도: 객실수 : 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예상량			kg/월			
	자가 감량 처리 계획	감 량 처 리			부산물 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 일 자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kg/일		kg/일	kg/월		
자 가 재활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위탁재활용 계 획	위탁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탁업소명	업 종	위탁업소 주소,전화		
	kg/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출진을위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처리 구분	처리에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주소(전화)	
자가 감량	kg/월						
자기재활용	kg/월						
위탁재활용	kg/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출진을위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영등포구청장				(인)			

현행	개정 (안)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16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그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특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2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8> (시행령) 제6조의2(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

현행	개정 (안)
(폐기물관리법) 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99. 2. 8>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제60조제1호 및 제61조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 <개정 '99. 2. 8>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개정 '99. 2. 8> 1의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설 '99. 2. 8>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삭제 <'99. 2. 8> 4.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축--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개정 '99. 2. 8>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9. 2. 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현행	개정 (안)
(현행조례)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기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호 신설) 제6조(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 ①영 제6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이라 함은 별표4의 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방법 외에 따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③영 제6조제3호 단서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비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99. 8. 9>
(시행규칙 별표4의 제5호) 5.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기준 및 방법 <본조신설 '97. 7. 19> 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퇴비화·사료화전문 중간처리업자, 농·축산가 또는 퇴비·사료제조업자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생 처리	(시행규칙 별표4의 제3호 라목) 라. 처리의 경우 (1)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 (가)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를 제외한다)중 1일 평균 연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현행	개정 (안)
또는 재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를 제외한다)중 1일 평균 연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그 영업에 필요한 단위업소별 객석(객실을 포함한다)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3)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5)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2)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야 한다.	(나)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그 영업에 필요한 단위업소별 객석(객실을 포함한다)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라)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마)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2)(1)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나)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